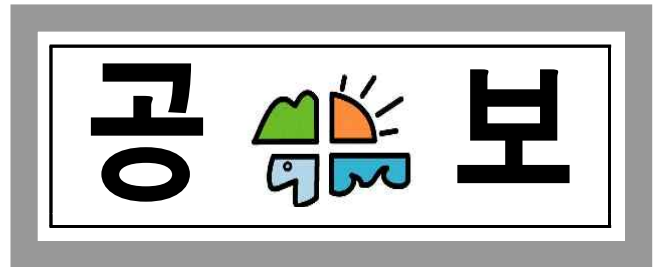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350호 2021년 10월 1일(금)

고 시

- 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18호선)결정 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... 2
- 설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5

공 고

- 속초 도시관리계획(도로: 소로1-12호선)결정(안) 공람·공고 6

입법예고

-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
-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7

속초시고시 제2021-113호

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18호선) 결정 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18호선) 결정이 부분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속초시 건설도시과(☎ 033-639-2447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1. 10. 1.

속 초 시 장

가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
☐ 교통시설(도로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 점	종 점	사용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
기정	소로	2	18	8	국지도로	46.0	동명 466-1	동명향	일반도로	1977.4.19. (강고 제72호)	부분 실효
변경	소로	2	18	6.5~8	국지도로	46.0	동명 466-1	동명향	일반도로	1977.4.19. (강고 제72호)	

☐ 도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

구분	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경	소로2-18	소로2-18	• 연장 변경없음 • 폭원 변경: 8m → 6.5~8m	○ 미집행 구간 부분 실효

나. 실효사유: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집행 구간 실효

다. 지형도면: 붙임 참조

○ 기정(35)



○ 변경(35)

1:1,200

도시관리계획(교통시설)(변경)결정 지형도면고지도

NO. 035



規格 L1200

[illegible]

INDEX		
18	19	20
34	35	36
53	54	55

설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21년 9월 29일

속 초 시 장

1. 설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

지구명	위 치	지정(변경)내용			지정사유	비고
		유형	등급	면적 (㎡)		
설악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	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246-20번지 일원	취약 방재 시설	가	21,309	○ 2020년 태풍에 의한 교각의 기초 침식 및 세굴, 교각균열 발생 등으로 홍수시 교량유실 및 유수소통 장애 발생으로 이에 따른 재해 발생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함 ※ 정밀안전진단결과 : “E”등급	

2. 지정기간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시까지

3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기관 : 속초시청

4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일자 : 2021. 9. 29.

5. 열람장소 : 속초시 안전총괄과(☎033-639-2403)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.

붙임 지형도면 고시도 1부. 끝.

속초시 공고 제2021-1020호

속초 도시관리계획(도로: 소로1-12호선) 결정(안) 공람·공고

1. 속초시 도시관리계획(도로: 소로1-12호선) 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,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0월 1일

속 초 시 장

가. 공고목적: 속초 도시관리계획(도로: 소로1-12호선) 결정(안) 공람·공고

나. 공고내용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12호선) 신설

- 결정 조서(안)

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형태	비 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
소로	1	12	10	국지 도로	200	중로1-5 도문 1311-2답	도문 1400-3천	일반도로	신 설

다. 공람기간: 공고일(신문게재일) 다음날로부터 15일간

라. 공람장소: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(☎ 033-639-2447)

마. 관계도서: 생략(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 참조)

바. 의견제출: 공람기간 내 공람 장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도시계획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1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등
3. 주요내용
 - 가.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(안 제16조의2)
 - 나. 용어 변경(성장관리방안→성장관리계획)(안 제19조의2, 제50조, 제55조)
 - 다.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반영(안 제26조의2)
 - 라. 자연녹지지역에서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폐율 완화(안 제53조)
 - 마. 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추가(안 제67조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: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22일까지 속초시장(참조 : 건설도시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직접방문등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qhistoryp@korea.kr

2) 주소 :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설도시과(도시계획팀) / 우) 24826

3) 연락처 및 팩스 : 033-639-2447(fax 033-639-2485)

라.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(033-639-244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)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준치기간(연장된 준치기간을 포함한 총 준치기간을 말한다)은 3년으로 한다.

제19조의2의 제목 “(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)”을 “(성장관리계획구역의 대상지역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”를 “영 제70조의12제3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”를 “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제26조의2에 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,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및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(부지면적이 1,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,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8.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(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제50조제1항제16호 및 제18호 중 “성장관리방안”을 각각 “성장관리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9호 중 “성장관리방안”을 “성장관리계획”으로 한다.

제5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.

1.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
2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

가.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

나.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

제55조제1항제19호 중 “성장관리방안”을 “성장관리계획”으로 한다.

제67조제2항 본문 중 “열람의”를 “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제19조의2(<u>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</u> <u>역 등</u>) ① (생 략) ②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에 따 른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. 1. · 2. (생 략) ③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 라 성장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 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 략) 제26조의2(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제외) 영 제57조제1 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 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 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 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및 도 시계획 조례 제18조 각 호의 어느	제16조의2(<u>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</u> <u>지 않는 가설건축물</u>) 영 제50조의 2제1호에 따라 존치기간(<u>연장된 존치</u> <u>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</u> <u>다</u>)은 3년으로 한다. 제19조의2(<u>성장관리계획구역의 대</u> <u>상지역 등</u>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영 제70조의12제3호----- ----- . ---- - 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③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---- ----- ----- . 1. ~ 3. (현행과 같음) 제26조의2(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제외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로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
에서 제외한다.

1. ~ 6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50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)

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
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
와 같다.

1. ~ 15. (생 략)

16. 자연녹지지역 : 20퍼센트 이
하(다만, 성장관리방안을 수립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
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, 제
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및 제
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
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에 따른
노인여가복지시설(부지면적이
1,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
한정하며,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
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
외한다)

8.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
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
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
로(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
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제50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)

① -----
-----.

1. ~ 15. (현행과 같음)

16. -----
성 장 관 리 계 획

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)

17. (생 략)

18. 생산관리지역 : 20퍼센트 이하(다만,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)

19. 계획관리지역 : 40퍼센트 이하(다만,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)

20. · 21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53조(건폐율 완화) ① ~ ⑥ (생 략)

<신 설>

17. (현행과 같음)

18. 성 장 관 리 계 획

19. 성 장 관 리 계 획

20. · 21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3조(건폐율 완화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.

1.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

2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

가.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

제55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8. (생략) 19. 계획관리지역 : 100퍼센트 이하(다만, <u>성장관리방안</u>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) 20.·21. (생략) ② ~ ⑤ (생략) 제67조(회의의 비공개 등) ① (생략)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·장소·안건·내용·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<u>열람</u>의 방법으로 공개한다. 다만,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<u>나.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</u> 제55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 ① ----- -----. 1. ~ 18. (현행과 같음) 19. ----- <u>성 장 관 리 계 획</u> ----- 20.·21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67조(회의의 비공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

관 계 법 령

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54조(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)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(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)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0조의2(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) 법 제54조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.

1. 존치기간(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)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
2. ~ 3. (생략)

제57조(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)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도시·군계획사업(「택지개발촉진법」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·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)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.

1. (생략)

- 1의2. 녹지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)는 제외한다.

가. ~ 나. (생략)

- 다.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·규모(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)·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

1) ~ 4) (생략)

- 5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(부지면적이 1,500제곱

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,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6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(부지면적이 1,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,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7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(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,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,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8) ~ 10) (생략)

11) 1)부터 10)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(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라. ~ 마. (생략)

2. (생략)

② ~ ⑦ (생략)

제84조(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) ① ~ ⑤ (생략)

⑥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~ 7. (생략)

8.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: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

가.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

나.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

1)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

2)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

⑦ ~ ⑨ (생략)

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, 폐지 이유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0월 1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「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
폐지조례안」

2. 폐지이유

- 2010년 조례 제정 이후 가용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기금 조성 실적이 없으며, 2020년 11월 유사·중복기능을 가지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유명무실화된 조례로 남아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

4. 자치법규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가.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10. 21.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기획예산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
나.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

- 주 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기획예산과(예산팀)
- 연락처 : 전화(033-639-2115), 팩스(033-639-2106)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

6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기획예산과 예산팀(☎033-639-211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